

부산지역국립대학혁신네트워크 협의회 회칙

(Busan National University 4 Networks: BNU 4 NET)

제정 2019. 9. 30.

제1장 총칙

제1조(명칭) 본 협의회는 “부산지역국립대학혁신네트워크 협의회” (이하 “협의회” 라 한다)라 한다.

제2조(목적) 협의회는 국립대학육성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지역 국립대학 간 교류·협력 활성화를 위해 체결한 대학 간 상호협약에 근거하여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정책 방향 설정 및 공동 사업 추진, 성과 공유 및 확산 등에 관하여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활동) 협의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.

1. 국립대학육성사업의 대학 간 네트워크 4개 분야(교육·연구, 지역사회 기여, 자원공유, Outreach Network)의 사업 방향 설정 및 공동 사업 발굴·추진
2.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성과 공유 및 확산
3. 대학 간 자원공유를 위한 협력
4. 지역인재 양성 및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 사업 발굴 및 연구
5. 기타 본 협의회 운영 및 목적에 기여하는 활동

제2장 회원

제4조(회원) ① 상호협약 당사자인 부경대학교, 부산교육대학교, 부산대학교, 한국해양대학교를 회원교로 하고 각 대학의 기획처장을 총괄책임자로 한다.

② 협의회는 운영과 대학 간 원활한 협조를 위해 1년 주기로 회장교를 선임한다.

제5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

① 회원은 본 협의회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② 회원은 본 협의회가 지정한 업무를 성실하게 처리하고, 협의회 운영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
③ 각 회원교는 협의회가 정하는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
제3장 회계

제6조(경비의 조달방법 등) ① 협의회는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교의 분담금으로 조달한다.

② 협의회 운영비 지출관은 회장교에 일임한다.

③ 협의회 운영비는 국립대학회계 예산 집행지침을 준용하여 집행한다.

④ 회계연도 종료 후 지출관은 다음 지출관 선임 전 운영비 집행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회원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필요 시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회계감사를 할 수 있다.

제7조(회계연도) 본 협의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회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세부사항) 이 회칙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원교 간 협의에 따른다.